

양주 회천지구 A-20BL 대광로제비양 2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2022.02.08.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 후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민간 사전청약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06.입니다.(청약자격조건 of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양주시)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06.)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전당첨자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향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당첨자는 금번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당첨자발표일에 동·호 배정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08.)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06.)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 또는 자위 포기하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3.01.26.)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정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공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자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본청약 의사를 확정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되며 자격검증 후(주택소유, 전입 제한기간 충족 등)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에 분양하는 후반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미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음을 인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후반양 단지로 공정 진행상 마이너스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 개요

1) 공급 규모

- ①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A20블록
- ②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29층 5개동 총 526세대 중 본청약 공급 1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70세대(일반[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2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 ③ 주 택 형 : 74A㎡: 109세대, 84A㎡: 261세대, 84B㎡: 132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지역	74	84A	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국가유공자		1(3)	1(3)	1(3)	3(9)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1(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3)	-	1(3)
	중소기업근로자		1(3)	-	-	1(3)
	철거민	한국토지주택공사	-	1(3)	-	1(3)
		양주시	-	-	1(3)	1(3)
		소계	-	1(3)	1(3)	2(6)
	장애인	경기도	1(3)	-	-	1(3)
		서울특별시	-	-	1(3)	1(3)
		인천광역시	-	1(3)	-	1(3)
		소계	1(3)	1(3)	1(3)	3(9)
	합계		3(9)	5(15)	3(9)	11(33)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모집공고 예정일	2023. 01. 06.(금)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3.01.16.(월) 09:00~17:30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방문접수	2023.01.16.(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3. 01. 26(목)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당첨자 계약 기간	2023. 02. 06(월) ~ 2023. 02. 08(수)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

-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자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분양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회천 덕계역 2차 대광로제비앙 대표번호 1522-3636